

---

# 정관

---

에이치엘디앤아이 한라 주식회사  
HL D&I Halla Corporation

---

---

## 목 차

---

제 1 장 총 칙 .....	3
제 1 조 (상 호)	
제 2 조 (목 적)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제 4 조 (공고방법)	
 제 2 장 주식 .....	7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 6 조 (1주의 금액)	
제 7 조 (주식의 종류)	
제 8 조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제 8 조의2 (전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 10 조 (신주인수권)	
제 10 조의2 (일반공모증자 및 제3자 배정증자)	
제 10 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제 10 조의4 (동등배당)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제 12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 3 장 사채 .....	12
제 14 조 (사채의 발행)	
제 14 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	
제 15 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4 장 주주총회 .....	14
제 17 조 (소집시기)	
제 18 조 (소집권자)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제 20 조 (소집지)	
제 21 조 (의장)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 27 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b>제 5 장 이사·이사회</b>	<b>16</b>
제 29 조 (이사의 수)	
제 30 조 (이사의 선임)	
제 30 조의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제 31 조 (이사의 임기)	
제 32 조 (이사의 보선)	
제 32 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제 33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제 34 조 (이사의 직무)	
제 35 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제 37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 38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 39 조 (이사회의 의사록)	
제 39 조의2 (이사회 내 위원회)	
제 40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 41 조 (상담역 및 고문)	
<b>제 6 장 감사위원회</b>	<b>19</b>
제 41 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제 41 조의3 (감사위원회의 직무등)	
제 41 조의4 (감사록)	
<b>제 7 장 계 산</b>	<b>21</b>
제 42 조 (사업년도)	
제 4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제 43 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제 45 조 (이익배당)	
제 46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b>부 칙</b>	<b>22</b>

---

---

## 제 1 장 총 칙

---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 HL D&I HALLA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내외 영림업
2. 국내외 산림조사 및 개발사업
3. 임산물의 판매 및 대리업
4. 국내외 광산물조사 및 개발사업과 동 가공판매업
5. 국내외 에너지 자원조사 및 개발사업과 동 가공판매업
6. 농수산 및 축산물의 생산판매업
7. 토목·건축 공사업
8. 전기공사업
9. 정보통신 공사업
10.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1. 도·소매업
12. 물품매도확인서 발행업
13. 건물 자영 건설업
14. 음식 및 숙박업
15. 정구장, 수영장, 골프장등 운동설비 운영업
16. 공원 및 해수욕장 운영업 등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17. 준설 공사업
18. 중기 임대업
19. 주택건설업
20.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21. 수질오염방지 시설업
22. 소음·진동방지 시설업
23. 대기오염방지 시설업
24. 소방설비 공사업
25. 해외건설 일반공사업
26. 해외건설 특수공사업

- 
- 27. 해외건설 전기공사업
  - 28. 철강재설치 공사업
  - 29. 도시가스 시설업
  - 30. 군납업
  - 31. 문화재보수 공사업
  - 32. 조경공사업
  - 33. 기술용역업
  - 34. 오수정화시설 설계 시공업
  - 35. 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 36. 종합감리업
  - 37.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운영업
  - 38. 여행알선 및 운수관계 서비스업
  - 39. 체육시설업
  - 40. 골재채취 및 판매업
  - 41. 관광호텔업
  - 42. 플랜트의 설계, 제작, 시공, 처리 용역 및 보수운영업
  - 43. 종합휴양업
  - 44. 토지개간, 간척 및 매립사업
  - 45. 노인복지시설 및 일반요양시설 운영업
  - 46. 환경영향 평가업
  - 47. 환경오염 측정대행업
  - 48. 일반폐기물 처리업
  - 49. 특정폐기물 처리업
  - 50. 공유수면 매립업
  - 51.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업
  - 52. 자원 재활용업
  - 53.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 시공업
  - 54. 산업설비 공사업
  - 55.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관련사업
  - 56. 건설사업 관리업
  - 57. 무역업

- 
- 58. 토양정화업
  - 59. 지하수정화업
  - 60.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61.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일체
  - 62. 신·재생에너지 사업
  - 63. 부동산개발업
  - 64. 운송장비 임대업
  - 65. 보관 및 창고업
  - 66. 육상, 수상, 항공 화물운송업 및 관련 서비스업
  - 67. 화물 취급업
  - 68. 물류 컨설팅 사업
  - 69. 컴퓨터시스템 통합 관련 자문, 설계, 구축 서비스업
  - 70. 정보통신 관련 교육, 컨설팅, 조사용역, 연구개발업
  - 71. 소프트웨어 자문, 제조, 개발, 구축, 설치, 공급업
  - 72. 컴퓨터시설 및 전산장비 운영, 관리, 유지보수업
  - 7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74.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75.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임대, 보관, 설치 및 수출입
  - 76.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77. 부가통신사업
  - 78. 별정통신사업
  - 79. 발전시설 설치, 운영 및 공급업
  - 80. 조립식 건축재 생산 및 판매업
  - 81. 물, 환경 관련 설비의 설계, 제조, 판매, 시공 및 운영업
  - 82. 지하개발사업
  - 83. 리모델링업, 인테리어업
  - 84. 먹는 샘물의 제조, 가공, 판매업
  - 85. 회원권 분양 대행업
  - 86. 고속도로 휴게업

- 
- 87. 기업인수 및 합병 주선업
  - 88. 연수원, 교육원의 운영업
  - 89. 대형 할인점 운영
  - 90. 기타 대형종합소매업(아울렛사업)
  - 91. 통신판매업
  - 92.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업
  - 93. 바이오에탄올 제조 및 판매, 유통
  - 94. 자동차용 부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및 공급
  - 95. 수지,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
  - 96. 화학물질, 제품 제조 및 판매업
  - 97. 각종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 98. 해외농업 · 산림자원개발사업
  - 99. 발전, 송전 및 변전사업
  - 100. 실내건축공사업
  - 101. 환전업
  - 102. 교육서비스업
  - 103. 인터넷이용교육업
  - 104. 에너지진단업
  - 105.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①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hldni.com>)에 게재한다.  
②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다만, 해당 신문의 사정으로 회사의 공고가 불가능할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할 수 있다.

---

---

---

## 제 2 장 주 식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이하 “1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 이내로 하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그 수를 정한다.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을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하되,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에 배당시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그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한다.

제8조의2(전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2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 이내로 하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그 수를 정한다.

②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을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이상

---

으로 하되,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2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에 배당시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2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비율은 1:1에서 1:5의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⑥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거래선 및 기술제휴선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자 및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내외자금제공자가 요청하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최대주주(관계 법령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관계 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2(일반공모증자 및 제3자 배정증자)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액면금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거래선, 기술제휴선, 국내외 투자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내외 자금제공자가 요청하는 법인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종류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4(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주주명부 작성·비치) ①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에 기재변경을 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제 3 장 사 채

---

#### 제14조(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거래선, 기술제휴선, 국내외 투자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내외 자금제공자가 요청하는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제15조(신주인수권부 사채)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거래선, 기술제휴선, 국내외 투자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3.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내외 자금제공자가 요청하는 법인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

## 제 4 장 주주총회

---

제17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 근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2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배치한다.

---

---

## 제 5 장 이사·이사회

---

제29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제30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2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하며 대표이사 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여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8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안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 제 6 장 감사위원회

---

제41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의3(감사위원회의 직무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

---

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 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1조의4(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 제 7 장 계 산

---

제42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44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4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

##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정관 제·개정

---

1980. 05. 02.	정관제정
1980. 11. 13.	1차 정관개정
1980. 12. 09.	2차 정관개정
1980. 12. 29.	3차 정관개정
1981. 05. 22.	4차 정관개정
1988. 03. 14.	5차 정관개정
1989. 03. 29.	6차 정관개정
1990. 02. 09.	7차 정관개정
1990. 04. 28.	8차 정관개정
1990. 05. 30.	9차 정관개정
1990. 07. 07.	10차 정관개정
1991. 02. 19.	11차 정관개정
1991. 07. 03.	12차 정관개정
1994. 05. 03.	13차 정관개정
1995. 03. 17.	14차 정관개정
1996. 03. 15.	15차 정관개정
1997. 03. 14.	16차 정관개정
1998. 03. 27.	17차 정관개정
1998. 12. 10.	18차 정관개정
1999. 03. 30.	19차 정관개정
2000. 03. 17.	20차 정관개정
2001. 03. 23.	21차 정관개정
2002. 03. 22.	22차 정관개정
2004. 03. 19.	23차 정관개정
2006. 03. 17.	24차 정관개정
2009. 03. 27.	25차 정관개정
2011. 03. 18.	26차 정관개정
2012. 03. 16.	27차 정관개정
2013. 03. 29.	28차 정관개정

---

2013. 10. 01.	29차	정관개정
2014. 03. 28.	30차	정관개정
2015. 03. 20.	31차	정관개정
2017. 03. 24.	32차	정관개정
2019. 03. 28.	33차	정관개정
2021. 03. 19.	34차	정관개정
2022. 03. 25.	35차	정관개정
2022. 09. 05.	36차	정관개정
2023. 03. 23.	37차	정관개정